

예 산 총 칙

201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268,147,008 | 8,044,410 |
| 일반회계 | 242,062,846 | 7,261,885 |
| 특별회계 | 26,084,162 | 782,525 |
| 기타특별회계 | 26,084,162 | 782,525 |
| 상수도특별회계 | 3,327,814 | 99,834 |
| 항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| 109,567 | 3,287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80,606 | 2,418 |
|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| 10,107,600 | 303,228 |
|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| 1,045,518 | 31,366 |
|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| 1,141,145 | 34,234 |
|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76,968 | 2,309 |
|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| 224,000 | 6,720 |
| 경영(수익)사업특별회계 | 400,000 | 12,000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| 9,443,652 | 283,310 |
| 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| 80,000 | 2,400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| 38,292 | 1,149 |
| 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| 9,000 | 270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428,654천원으로 한다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7,1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